

제43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5일(화)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18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18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18
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18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18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18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 23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5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리고 해당 시도 경찰청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방감사 1반과 제2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에 개청될 예정이므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중수청 개청 이후에 국정감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른 세부 일정 조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10시0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식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해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중수청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한정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의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수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중수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한정하여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이해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위원님 모두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오늘,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관님, 10월 2일 출범 전까지 중수청장은 임명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10월 1일까지 청장 임명을 마치려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시한 20일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9월 11일까지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권영진 위원 그런데 정부는 최소한의 법정시일 검토시일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 제출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동조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석연휴 이후로 미룬다고 합니다.

법이 국회에 부여한 20일의 검증 기간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엄정히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시한입니다. 이 시일 자체를 박탈하는 것, 국회 인사 검증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볼게요.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 지명 보류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권영진 위원 아십니까, 보류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영진 위원 근데 지금 대체로 오늘 여러 언론에서는 여당 내의 강경파들의 반대로 인해서 임명이 철회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 철회될 가능성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제 후보자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권영진 위원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제청하셨잖아요. 대통령께 장관께서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질문을 여쭙보냐 하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10월 1일 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저희로서는 지금 준비할 시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법정 시한도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대 중수청장후보자는 김지용 후보자다 이렇게 알고 청문회 준비를 해도 시간 낭비 아니냐를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또 임명하실지의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저는 제청권자로서의 역할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추가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럼 추가 검증을 한다는 것은 지명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언론에서 추측하듯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절차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권영진 위원 하여튼 저희들 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정 기간은 국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현직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와 같이 후보자를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시한은 주고 검증을 해 달라고 해야지 국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 같습니다. 그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중수청장의 무거운 소임을 맡길 분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다음, 박상웅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 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는데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근거로 담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오늘 바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까지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핵심

수사범위를 개청 직전에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일이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폐지할 때 수사 공백을 막을 대안까지 함께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조문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중수청이 담당하려고 했던 업무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이런 공백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알고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먼저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 다시 보완수사 기능을 넣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뺑질 기법 아닙니까?

초대 중수청장 인사도 지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도 반대했던 인사라고 알고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지금 해명하는데 대통령은 다시 검증하라고 하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로 발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검증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후보자 발표 전에 했어야 될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그래서 10월 2일 개청 전에 중수청장이 과연 임명될 수 있을까? 그러면 중수청장 없는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권한대행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건가? 지금 행안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의 형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지금 며칠 있으면 개청일인데 실제 며칠 앞두고 현재 임용 상태라든지 적재적소에 부처 배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대의기관의 대표자들인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청장조차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사제도는 개청 직전에 다시 뜯어고치고 줄속 입법을 다시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중수청을 출범시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흐려 매고 쓸 수는 없듯이 중수청 출범을 너무 목적을 거기다 강하게 두고 무리하게 10월 2일 날 출범하고야 말겠다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자체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년으로 넘기는 건 어때냐. 그 안에 지금 600여 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중수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수사기관인데 이렇게 양쪽 다 지금 지도부가 공백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부터 다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천해서 임명을 하고 중수청장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보완 입법도 중수청법을 보완 입법하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완수사가 아니라. 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경찰청장 문제는 언론에 두 분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서울청장하고 지금 대행께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래도 장관님께서 추천을 해서 검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아직 제청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박덕흠 위원**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온 걸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언론에서는 그보다 더한 추측 보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글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틀린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덕흠 위원** 그런데 장관님, 왜 지금까지 경찰청장을 임명을 안 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계급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정감 중에서 치안총감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치안정감이었던 분들이 대부분 임기 2년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치안정감이 임명되는 데 시간이 걸린 거고요.

○**박덕흠 위원**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먼저 지금 저희가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법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를 시키면 되지, 여당 입장에서는 다 통과시키면서 왜 그건 통과를 안 시키면서 그 핑계를 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 장관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

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 지역에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면 도대체 경찰청장을 임명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가 치안총감으로 연이어서 승진한 경우가 적어도 몇 개월의 텅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글썄요.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여쭙보는 거고.

대행님, 지금 정년이 몇 년 남으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한 4년 남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렇게 4년 남으신 분 있잖아요. 대행시키지 말고 빨리 제청해서 시키면 되지, 그런 핑계를 대시고 그러세요. 홀랑하니까 대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으니까? 청장 하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만 안 하니까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논의 초기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행안위에서는 협치를 하면서 그래도 모범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속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도 오늘 올려서 22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저는 고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여당 쪽에서 몇몇 인사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중수청장 추천된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시는 것처럼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지 될 아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절차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절차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제청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요청이 정부로부터 와야 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정부에서 보내 주면 되는데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또 아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대로 운영이 된다면 공소청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 사기·절도·횡령 죄명과 상관없이 수사를 공수처에서 했던 국가수사본부에서 했던 중수청에서 했던 상관없이 모두 다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요?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할 수는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수청의 인력 가지고 이것 다 소화할 수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중수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중수청 인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중수청이 설립된 취지와 역할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수청법 개정안을 우리가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는 7대 범죄로 한정한다, 그리고 중대범죄에 한해서 한다고 한정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수청이 원래 설립된 중대범죄 7대 범죄 수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약자를 권리보호한다는 합리적 목적을 달성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이지 순간적으로 땀질이나 준비 안 된 입법 보완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중수청장후보에 대해서 중수청장후보가 중수청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관님도 모르시지요? 모르지요. 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중수청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중수청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기능,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이번 중수청장후보를 제청하시면서 제1 덕목으로 정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또 조직에 대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 수사기능을 재편성하거나 할 때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체계 정합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권·수사체계 개편에 관해서 늘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항상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것 보면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런 점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제도가 가진 장단점 중에서 단점이 드러나면 그것 고치는 데만 급급하지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또 날아가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형사법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이것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서 저는 후과가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선풍기 아줌마’라는 표현 들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고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고치다가 해서 얼굴이 완전히 누더기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되겠지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행 전에 와서 이렇게 법 바꾸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출범 조직 챙기고 딱 스타트할 때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만약에 첫 출범하는 중수청장이 지금 제청한 사람이 비토되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중수청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청한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에 범이 나타나면 문을 튼튼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은 안 고치고 있다가 갑자기 범이 와서 보니까 문구멍이, 뽕꾸가 나 있으니까 그 문구멍을 틀어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범 본 여편네 창구멍 틀어막듯’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대책이 됩니까, 안 되지? 문구멍, 뽕꾸가 난 다음에 막는다고 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다음에 왜 수사기관 책임자들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명 안 하는지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적합한 치안정감이 대상자가 없다? 왜 없습니까, 7명이나 있는데? 또 임기를 2년 다 채워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1년 하다가 연령이 정년 되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무슨 대응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직무대행 체제를 주고 전부 경쟁시켜서 직무대행 체제를 1년 이상 가지고 가면서 ‘너희 잘 보이면 직무대행 때 주겠다’ 이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것 말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지금 다 무력화돼 있고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지금 1년 넘게 다 직무대행 체제인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찰청에서는 청장이 직접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수사기능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무대행이라는 게 다들 직무대행 떼고 싶은데 자기 신상의 걱정 때문에 제대로 직무를 할 수가 있겠으며 잘 보여야 직무대행이 떨어질 텐데…… 이런 것 하나 있고, 나머지 대상 되는 사람들도 전부 권력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직무대행이 되든지 청장이 될 수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저도 의원직 가지고 장관을 해 봤습시다마는 저는 겹직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란 것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인사권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 못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걱정이 많아서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번 법안을 다루면서 그리고 이번 중수청 출범을 논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민주 수사의 원년을 맞이하겠구나. 이제 수사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인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라고 사실은 자리매김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러 야당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논의를 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잘 정제돼서 조문에 담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법안을 다루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함께 자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저희가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들을 지금 장관님을 상대로 또는 정부를 상대로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고로 지금도 행정법 할 때—저도 시험을 쳤습니다만—‘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를 논하시오’ 이게 행정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예상 출제 1번이 거의 그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권 발동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뭐 얘기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자리매김한 지 오래 아닙니까? 수사도 권한이 아니라 수사 서비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단초가 이번에 저희들의 일련의 검찰개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도 없는 단어가

민주검찰이거든요. 왜 검찰의 주인이 검사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검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인 하루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야당 위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저간의 사정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여야 합의가 돼서 합의 처리가 되든 그렇지 못하다면 표결을 통해 빨리 처리를 해서 정부에서 10월 2일 출범에, 일분일초가 정말 안타깝게 흐르는 시간을 저희들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시행령 관련 질문이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43조를 한번 봐 주시면 현행은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나목을 다목으로만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아시지요? 혹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장관님도 보고 계셔야 제가 질문을 제대로……

그런데 대통령령이라 함은 어쨌든 시행령이고 부처에서 준비하잖아요. 사실상 대통령이 준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10월 2일 개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령이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이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해주시면요.

○김예지 위원 그래도 정하는 범죄가 뭐인지를, 적어도 그 바운더리는 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진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오늘 어쨌든 표결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적으니깐 어쨌든 간에 통과는 될 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간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행령 안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거가 궁금해서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시행령을…… 그렇잖아요.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면 되고 표결에 의해서 어쨌든 다수당이 하시는 게 계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통과가 되면 또 고치고 그러기가, 부처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적인 하지만 또 시간이 필요해서, 어차피 통과될 건데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것 좀 알려 주시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 그리고 김예지 위원님께 개정안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언제쯤? 오늘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지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늘 안에……

○**김예지 위원** 오늘 안에요? 저희 그러면 회의 계속…… 저 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간 되실 때……

○**김예지 위원** 그러면 그거 저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인원이 지금 다 됐나요? 2874명이 중수청 출범 초기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됐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은……

○**김예지 위원** 혹시 저는 중간에……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은 1차로 1700명 정도 검찰에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신청을 해 왔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신청이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요? 강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을 통해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또는 금융 전문가들 또 경찰 등 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수사 공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쭙봤던 거고.

이 시행령 또한 명확하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하는 게 없는데 이거는 그러면 보고가 어떻게 되나…… 그사이에 이거 시행령 될 때까지는 보고가 안 되나 이런 것 걱정이 돼 가지고요.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바로 자료를 의원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하고,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분.

○**강명구 위원** 진중오 위원.

○**위원장 김영진** 진중오 위원님 발언 예정이세요?

○**진중오 위원** 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진행발언?

○**진중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강명구 간사님 하고 오늘 토론 및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순으로 하고 토론과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경찰청장의 임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초유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이 탄핵된 게 1년 만에, 그러니까 12·3이 있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파면됐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공석이 됐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탄핵 과정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고위 간부들, 총경 이상 고위직 간부들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총리실에서 중앙징계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해 가지고 거기서 22명을 최근에 징계 조치를 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도 불법 비상계엄 그 초유의 사태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들이 온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안정감과 또 치안감을 최근에 또 임명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만간 경찰 인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중수청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 경찰청장 임명은 당연한 것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그런 아픈, 그런 어떤 경찰의 역사에서 씻지 못할 그러한 과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씻고 그러한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관님께서 좀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오해가 계속 생겨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찰 총수의 공백 기간이 길었다라는 점만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이 내란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정리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백에 있는 경찰이 고위직 인사를 순차적으로 승진시켜서 채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행안위에서 꼭 짚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에 청문 대상자도 아닌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김승원 후보자 검증과 한동훈 의원의 정치자금에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관련성이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명분으로 특정 정치인의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은 자료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악용 문제입니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요구해서 줬다, 공개자료라서 줬다라는 답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무슨 법적 근거로 제출했는지, 후보자와 어떤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누가 제출을 결정했는지 행안위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진중호 위원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국회의원후보자나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하는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공개합니다.

○권영진 위원 공개합니까? 어떤 경우에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42조를 보시면 거기 4항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 그것 말고는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를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국회의원후보자 시절이나 후원회의 회계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이나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 권한대행이 법도 잘 모르고, 공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의 회계보고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회법에 따른 직접 관련된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직접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결을 통해서 온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것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여줍니다.

○**권영진 위원** 아니, 그동안 선관위가 자기 자체 조직과 관련된 자료 안 주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무슨 그렇게 줬다고 하세요.

내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선관위는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고 정치 개입이나 야당 탄압의 오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후보자 시절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원후보자나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이외에도? 그 부분들, 그 사례와 그 법적 근거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선관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늦어지면 국정감사가 예정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명구 간사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위원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서 시행 2주 남겨 놓고 7대 범죄 끼워 넣어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중수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고치겠다고 하는 게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고요.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7대 범죄를 고른 기준은 또 뭔지, 7대 범죄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또 뭔지, 궁극적으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가 구분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장윤기 사건이 스토킹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입니다. 그러면 중수청에서 장윤기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입니까? 살인사건은 수사 못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스토킹사건만 수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재편하면서 어떻게 수장을,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면서 최소한 수장은 있어야지 그 조직의 기강도 세우고 개혁을 하겠다는 계획 플랜도 세우고 인적 쇄신도 할 것 아닙니까? 수장을 지금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입니까? 경찰청장은 기약도 없이 직무대행으로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고 공소청장 후보조차 찾지 못하고 중수청장은 여러분들 지명해 놓고 지금 인사청문요청서조차 우리 국회에 못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아요. 여당 내부에서 반발하니깐 지금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청문회를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하는 것입니

까, 여당 강경파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당 간사님한테도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행안위 여당 간사님이 누구신지 아니면 추미애 지사가 진짜 여당 간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일 날 이제 출범이 코앞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보고 법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졸속 개편에 동조하라는 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법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수청법이 통과된 이후 여야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성폭력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공감을 사실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중수청법안의 통과에 따른 부수법률안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중수청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해 내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법안을 토론하고 의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진행할 수……

○강명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차이를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명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7대 범죄만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중수청……

○이상식 위원 아니,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발언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의결하게 가세요.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피해 입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왜 7대 피해자만 피해자입니까?

○이상식 위원 그래서 더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발언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7대 범죄에 대한 조항들을 오늘 개정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 여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정해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완수사권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본회의장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펠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안

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공소청의 조직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법률안이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안정적인 중수청의 정착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의 가족도 언젠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완수사권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그러면 돌고 돌아 원위치입니다, 돌고 돌아 원위치!

○위원장 김영진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심사할 법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나가실 거면 나가세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 의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여당 위원들 모두 책임지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예, 저희들이 꼭 책임지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가시지요, 나가시기로 하셨으면.

○이해식 위원 의사진행 방해가 되니까. 간사님, 그 정도 하세요.

○박상웅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줄속 입법을 막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줄속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9분)

○위원장 김영진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시다만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초기 1안으로 중수청법안에 대한 의결도 잠시 후에 심사할 법안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고 안전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 상정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2인 중 출석 12인, 찬성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조속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우리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11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지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6건의 법률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및 조직 개편과 관련된 현행 보완수사권법률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압수물건뿐 아니라 압수물건의 보관증 인계 대상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이 되는 재해의 적용 대상에서 검찰청 직원을 삭제하고 공소청 직원 및 중수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해보상 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청 직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특정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검찰청 직원이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대통령선거 등에 대한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 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어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장 지청의 장을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수청수사관을 지문채취의 주체에 포함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문채취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수사요구 제도,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공소청 및 중수청 경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자격에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4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청에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체계·자구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에 중수청수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과 수정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법률안에 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의 조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의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별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들은 각각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2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관련 제도를 비롯하여 인력과 시스템 준비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이해식 법안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완 사무총장직무대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행정조직 기반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김종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으로 우리 중수청이 본래 취지대로 정착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대범죄수사와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각 기관장과 기관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위 일정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명구 권영진 김영배 김영진 김예지 박덕흠 박상웅 박정현 박주민 박홍근
서명옥 양부남 윤건영 이상식 이해식 임호선 정춘생 주호영 진종오 채현일

○청가 위원(2인)

용혜인 이광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김세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방세제국장 이현정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부단장 이진용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김종철

기획조정관 송유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법제국장 박세진

임시회의록